

#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 운영규정

전문제정 2019.05.22. 개정 2020.09.15. 개정 2023.05.31

## 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 제2조 (기능)<개정 2023.05.31.>

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수 · 학습 방법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
2. 교육매체 제작활용에 관한 기획, 연구·개발, 자문에 관한 사항
3. 교수능력 향상을 위한 제반 연수에 관한 사항
4. (삭제)
5. 코칭 및 학생상담기법 연수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
6. (삭제)
7. (삭제)
8. (삭제)
9. (삭제)
10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

## 제3조 (구성)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, 위원은 본 대학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, 간사는 교수학습개발팀 직원으로 한다.

## 제4조 (임기)
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.
-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.

## 제5조 (위원장등의 직무)

-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실무를 관장한다.

## 제6조 (회의)

- ① 위원회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.

제7조 (회의록의 작성)

- ① 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② 회의록은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.

제8조 (연구비 등)

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 및 회의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부 칙(2019.05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19년 05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09.15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09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3.05.31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3년 0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